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법제처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3. 7. 00. ~ 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철도경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철도경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5항 후단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7항 후단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

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7항 후단 중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후단 중,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6항 후단 중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6항 후단 중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후단 중 “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 ·
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 후단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교육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단서를 삭제한다.

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지역협력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3항 중 “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시설사무관 또는 행정

사무관”으로 하고, “행정주사·시설주사·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”를 “공업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,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”을 “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며, “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”을 “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,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”으로 하고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며, “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4항 중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”를 “공업사무관·행정사무관·공업주사 또는 행정주사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안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보안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 후단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공항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, 공항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”을 “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공항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행정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, 공항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2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행정사무관 · 항공사무관”을 “항공사무관 ·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1항 단서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53조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9명(4급 2명)”을 “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21명(4급 4명)”으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별표8과 같다”를 “별표8과 같으며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정원 중 2명(3급 또는 4급 1명, 4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“별표9의2와 같다”

를 “별표9의2와 같으며,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(4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 “2명(철도경찰주사 1명, 철도경찰주사보 1명)”을 “2명(6급 1명, 7급1명)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“2명(항공주사 2명)은 임기제공무원”을 “2명(6급 2명)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59조를 삭제한다.

제60조의3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7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7의2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8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9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9의2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12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12의2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14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18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20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[별표 7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6조제1항 본문 관련)	
(앞단 생략) ...	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7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60
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	1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8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철도경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17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철도경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2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5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	1
과학기술서기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	3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	7
(후단 생략) ...	

[별표 7의2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6조제1항 단서 관련)	
(앞단 생략) ...	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7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60
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	1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8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철도경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17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철도경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 재안전사무관	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	2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5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	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 무관	1
과학기술서기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	3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	7
(후단 생략) ...	

[별표 8]

<u>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(제57조제1항 관련)</u>	
(앞단 생략) ...	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
(후단 생략) ...	

[별표 9]

<u>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57조제2항 본문 관련)</u>	
(앞단 생략) ...	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0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4
(후단 생략) ...	

[별표 9의2]

<u>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57조제2항 단서 관련)</u>	
(앞단 생략) ...	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0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4
(후단 생략) ...	

[별표 12]

<u>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(제57조제5항 본문 관련)</u>	
(앞단 생략) ...	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
과학기술서기관	2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	1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	1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	2
(후단 생략) ...	

[별표 12의2]

<u>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(제57조제5항 단서 관련)</u>	
(앞단 생략) ...	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
과학기술서기관	2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	1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	1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	2
(후단 생략) ...	

[별표 14]

<u>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57조제7항 관련)</u>	
(앞단 생략) ...	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	1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	1
(후단 생략) ...	

[별표 18]

<u>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</u> (제60조의3제2항 관련)	
(앞단 생략) ...	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
(후단 생략) ...	

[별표 20]

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61조 관련)	
(앞단 생략) ...	
9. 제61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3년 9월 30일)	
총계	3
일반직 계	3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	1
10. 제61조제1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4년 6월 30일)	
총계	2
일반직 계	2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항공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주사·공업주사·항공주사 또는 시설주사	1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대변인) ① (생 략)	제7조(대변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,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고, 홍보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, 디지털소통팀장은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철도경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철도경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</u> 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·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4조(운영지원과)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-----.
제5조(기획조정실장) ① ~ ④ (생 략)	제5조(기획조정실장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· 규제개혁법무담당관 · 청년정책담당관 · 재정담당관 · 미래전략담당관 · 국제협력통상담당관 · 정보화통계담당관 · 정보보호담당관 및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각 1명을 두며,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⑥ ~ ⑮ (생략)

제6조(감사관) ① (생략)

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고,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(생략)

제7조(국토도시실) ① ~ ⑥ (생략)

⑦ 국토도시실에 국토정책과·수도권정책과·지역정책과·산업입지정책과·성장거점정책과·도시정책과·도시경제과·도시활력지원과·녹색도시과·스마트도시팀·건축정책과·녹색건축과·건축문화경관과·건축안전과·국토정보정책과·공간정보제도과·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,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⑥ ~ ⑮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감사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국토도시실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건설안전과 및 시설안전과를 두
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
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공정
건설지원팀장은 서기관·기술
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
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⑤ ~ ⑬ (생 략)

제11조(교통물류실) ① ~ ⑤ (생
략)

⑥ 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총괄
과·교통안전정책과·교통서비
스정책과·생활교통복지과·물
류정책과·첨단물류과·물류산
업과 및 생활물류정책팀을 두
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
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생활
물류정책팀장은 서기관·기술
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
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⑦ ~ ⑮ (생 략)

제12조(항공정책실) ① ~ ⑤ (생
략)

⑥ 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·
첨단항공과·국제항공과·항공
산업과·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
기획팀·항공안전정책과·항공
운항과·항공기술과·항공교통

----- 부이사관·과학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
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
-----.

⑤ ~ ⑬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교통물류실) ① ~ ⑤ (현
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부이사관·과학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
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
사무관-----.

⑦ ~ ⑮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항공정책실) ① ~ ⑤ (현
행과 같음)

⑥ -----

과 · 항행위성정책과 · 공항정책과 · 공항운영과 · 항공보안정책과 및 공항건설팀을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 및 공항건설팀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⑦ ~ ㉑ (생략)

제12조의2(모빌리티자동차국) ① (생략)

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 · 자동차정책과 · 자율주행정책과 · 도심항공교통정책과 · 자동차운영보험과를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13조(도로국) ① (생략)

② 도로국에 도로정책과 · 도로건설과 · 도로투자지원과 · 도로관리과 · 도로시설안전과 및 디지털도로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디지털도로팀장은 서

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
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
-----.

⑦ ~ ㉑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모빌리티자동차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과학기술서기관
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도로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 과

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
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⑧ (생략)

제14조(철도국) ① ~ ③ (생략)

④ 철도국에 철도정책과·철도
운영과·철도건설과·철도투자
개발과·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
·철도안전정책과·철도운행안
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
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
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
다.

⑤ ~ ⑫ (생략)

제15조(국토교통인재개발원) ①
원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
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·기획과 및 교육과를 두되,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교육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시설사
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철도국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
④ _____

_____ 과학
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
-.

⑤ ~ ⑫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국토교통인재개발원) ① -
-----과학기술서기
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② -----

-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
관 · 서기관 · 시설사무관 또는
행정사무관으로, 기획과장은 과
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
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
기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
무관-----.

③ ~ ⑤ (생략)

제18조(지역협력국) ① 지역협력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지역협력국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(생략)

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지역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19조(도로관리국) ① 도로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(생략)

③ 도로계획과장·도로공사과장·도로공사1과장 및 도로공사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민자도로관리과장 및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, 교통안전팀장은 행정주사·시설주사·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지역협력국) ①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 . <단서 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지역협력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도로관리국) ①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 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

----- 공업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----- .

④ ~ ⑨ (생략)

제21조(건설안전국) ① 건설안전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22조(국토관리사무소) ① (생략)

②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,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,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,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,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,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,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,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,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,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,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,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,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건설안전국) ① -----
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국토관리사무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, 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,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

-----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

한다. 다만,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,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,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,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
· 공업사무관 · 행정주사 또는
공업주사로, 도로안전운영과장
및 시설안전관리과장은 시설사
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.

⑤ ~ ⑧ (생략)

제27조(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)

① 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 및 보안과를 두되,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보안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----- 과학기술서기
관 · 서기관 · 시설사무관 또는
행정사무관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공업사무관

· 행정사무관 · 공업주사 또는

행정주사-----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)

① ----- 과학기술서기관
또는 서기관-----.

② -----

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시설
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보
안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
사무관-----.

③ · ④ (생략)

제28조(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) ① 안전운항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 · 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, 항공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, 항공운항과장 및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9조(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) ① 관제통신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30조(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) ① 공항시설국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 · 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, 공항시설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공항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, 공항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) ① ----- 과학기술서기관-----.

②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) ① ----- 과학기술서기관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) ① 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② -----

-----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공항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

<u>업무</u>사무관으로 보한다. ③ ~ ⑤ (생략) 제32조(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) ① 관리국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 ② (생략) 제33조(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) ① 안전운항국장은 부이사관·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② ~ ⑤ (생략) 제34조(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) ① 공항시설국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, 공항시설과장은 <u>행정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</u>으로, 공항안전과장은 <u>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 ③·④ (생략) 제35조(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) ① 항공관제국장은 <u>기술서</u>	<u>무관</u>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32조(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) ①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33조(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) ① ----- --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34조(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) ①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-----. ② ----- ----- ----- <u>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으로, 공항안전과장은 <u>공업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35조(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) ① ----- <u>과학기</u>
---	--

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(생략)

제35조의2(제주지방항공청) ① 청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제주지방항공청에 운영지원과·안전운항과·항공관제과 및 항공시설과를 두되,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, 안전운항과장 및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, 항공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37조(김포항공관리사무소) ①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,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(생략)

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항공지원과·안전운항과 및 관제통신과를 두되, 항공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, 안전운항과장 및 관제통신

술서기관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5조의2(제주지방항공청) ① -----
-----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② -----

-----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
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김포항공관리사무소) ①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

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.	-----.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0조(공항출장소) ① 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, 소장은 <u>행정사무관·항공사무관</u>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.	제40조(공항출장소) ① ----- ----- -- <u>항공사무관·행정사무관</u> 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6조(철도경찰대) ① 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 <u>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할 수 있다.	제46조(철도경찰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3조(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) 사무국장은 <u>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53조(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)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-----.
제56조(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국토교통부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	제56조(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, 별표 7의2의 정원 중 5명(철도경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, 철도경찰주사 · 행정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주사 · 환경주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, 철도경찰주사보 · 행정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항공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·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

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또는 5급 1명),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법무를 담당하는 1명(6급 1명),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(9급 2명)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9명(4급 2명, 4급 또는 5급 2명, 5급 7명, 6급 5명, 8급 3명)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· ④ (생략)

제5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.

②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. 다만,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

-----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21명(4급 4명)-----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제5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----- 별표 8과
같으며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
정원 중 2명(3급 또는 4급 1명,
4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
임용할 수 있다.

② _____

_____ 1

0퍼센트 _____

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.

③ 삭 제

④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. 다만,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으며,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(철도경찰주사 1명, 철도경찰주사보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⑤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. 다만,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

--- 별표9의2와 같으며,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(4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④ -----

----- 10퍼센트-----

----- 2명(6급 1명, 7급 1명)-----

-----.

⑤ -----

----- 10퍼센트-----

별표 12의2와 같으며,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2명(항공주사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⑥ ~ ⑪ (생략)

제59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56조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”란 감사관 및 공항정책관을 말한다.
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도시활력지원과장, 공항운영상과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,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60조의3(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)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----- 2명(6급 2명)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-----.

⑥ ~ ⑪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60조의3(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) ① -----
-----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
② (생략)	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